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2
- 다. 상 정 일 자 : 97. 2. 25(제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 나. 제정이유
 - 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공영 주차장 요금을 현실화 하고,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완화함.
- 다. 주요내용
 -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96. 6. 29일 개정되면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 비율을 동 조례 제8조의 2규정에 의하면 부분 정비업소.세차시설 자동차 관련 사무실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30%미만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이하보다 완화하고 있음.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에 있어 현재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에서 부터 부설 주차장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로 도보거리 500M이내까지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를 완화 하였으며,
 - 노외 주차장의 설치시 용자금을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용자금의 규모를 확대함.
 - 공영주차장 요금의 경우 읍은 30분당 소형기준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대형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안의 제8조의 2 제2항 제2호규정의 노외 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이하의 규정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으로 30%이하로 완화하여 민영 유료 주차장 설치를 장려하였으며,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을 도보 500M 이내로 설치 거리를 완화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합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되며,
-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다소 무리함이 없지 않다 하겠으나 일부 시·군의 요금과 비교한다면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동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및 화순군 물가대책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동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17
----------	---------

제출년월일 : 1997. 2. 4.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화순군주차장조례를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범위 (안 8조의 2)
 - 부대시설의 범위를 부분정비업소, 세차시설, 자동차관련 사무실등까지 확대하고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30%까지 확대하여 정함.
- 공영주차장 요금표 (안 10조) : 별표 1참조
 - 장애인 주차요금 50% 감면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안19조)
 - 설치지역을 종전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까지 확대하고
 - 부설주차장 인근의 범위를 직선거리 2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M이내와 당해동리 및 통행여건이 편리한 인근동리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안 23조)
 - 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에 1면이상 전용구획을 설치
- 주차장특별회계 (안 26조제1항)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하고
- 주차장 설치 비용 융자금액 (안 28조)
 -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 법 제12조의2 제2항 및 영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 500%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frac{36}{\text{도로폭}}$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부분정비업소
2. 세차시설
3. 자동차 관련사무실 등

②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대시설의 종류 :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대시설
2.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 : 30% 미만

제9조 중 "제13조 제2항"을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주차장 정비 지구 및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주차장 설치"를 "부설주차장설치"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중 "연면적"을 "시설면적"으로 제3항중 "단수"를 "끝수"로 한다.

제17조 (부설주차장설치) ①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화순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내의接客업 및 숙박업소 시설을 제외한다)를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로 하고 제3항 중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로 한다.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중 아니된다. 다음에 "다만,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근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건축물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가. 직선거리 : 200M이내
나. 도보거리 : 500M이내
2. 당해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
3. 당해시설물과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동.리

제20조 제1항 중 "시행규칙 제4조"를 "시행규칙 제13조"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선정 기준등) ①영제9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 :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총설치비 ÷ 주차구획수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총설치비 : 토지가액 + 건축비
4. 토지가액 : 다음 각 목중 낮은 가액
 - 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
 - 나.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5. 건축비 : 설계도서에 표시된 금액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20%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법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한 경우
2. 교통상황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의 제목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업주차장 설치기준"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조업주차장 설치 기준) ①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업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위치는 조업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미관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시에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 1면 이상의 지체부자유자 전용 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제1항에 제12호 및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의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 ②의 3. 제1항의 세입관련 징수를 위한 필수경비

제2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용자금액등) ①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결정 심사를 할 때에는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안하여 20,000천원 범위안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제10조 관련)

급 지	지 역	차 종	1회 주차요금 (3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특급지	관 광	버 스 화물차		2,000	4,000		
	휴양지	승용차		1,000	2,000		
1 급지	도 시 지 역 (읍)	소 형	500			50,000	40,000
		대 형	700			70,000	60,000
2 급지	농 촌 지 역 (면)	소 형	300			30,000	20,000
		대 형	500			40,000	30,000

-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시간은 30분단위로 하며 30분 미만일 때에는 30분으로 한다.
3.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가. 4월 ~ 10월 08:00 ~ 20:00
 - 나. 11월 ~ 3월 09:00 ~ 19:00
4.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지역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세분할 수 있다.
5. 군수는 주차요금을 지역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20%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체증 또는 체감할 수 있으며,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50%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7. 정당한 사유없이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에는 1시간의 불법주차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100%의 가산금액을 징수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18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숙박 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4객실당 3대 +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 기타부대시설면적 3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의료 시설	종합병원	2평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8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운동 시설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2타석당 3대
	옥외수영장	정원 10인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관람 집회 시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판매 시설	예식장	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판매 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6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 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유흥음식점	시설면적 5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전기시설, 운수시설, 방송, 통신시 설, 창고시설(냉동, 내장창고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00㎡당 1대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단독주택	건축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건축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 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100㎡당 1대(주택건설기준등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비 고

1.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두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 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 "각테일 바" "다실" "연회실" "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와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 내지 3%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화순군 주차장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 (주차장 정비 지구안의 주차장) <u>법 제3조 제2항 및 영 제2조 제2항의</u> <u>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정비지구안에</u> <u>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u> <u>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u> <u>이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u> <u>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를 제외한다</u></p> <p>1. ~ 3. (생략)</p> <p>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 <u>율이 하로하되, 대지가 2이상의</u> <u>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u> <u>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u> <u>의 규정을 적용한다.</u></p> <p>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u>경우 : 건축물의</u> <u>도로의 반대쪽</u> </p>	<p>제6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 <u>법 제12조의 2 제2항 및 영 제3조</u> <u>의 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u> <u>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u> <u>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u> <u>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 <u>이하</u></p> <p>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도로 <u>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 .</u> <u>접한도로 (대지가 2이상의 도로</u> <u>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u> <u>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u> <u>같다)의 반대쪽</u> </p>

화순군 주차장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36/도로폭배 다만, 배율이 1.8 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p> <p><u>(신설)</u></p>	<p>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도로에 접할 경우 : 36/도로폭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일 경우에는 1.8배로 한다.</p> <p>제8조의 2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p> <p>①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부분정비업소</u> 2. <u>세차시설</u> 3. <u>자동차 관련사무실등</u> <p>②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대시설의 종류 :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대시설 2.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 : <u>30% 미만</u>

화순군 주차장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 <u>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u></p>	<p>제9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 . . <u>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u></p>
<p>제17조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로재개발 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① <u>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 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부지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17조 (부설주차장 설치) ① <u>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를 유발하는 시설(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내의接客업 및 숙박업소 시설을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당해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 <u>연면적에서 제외한다.</u></p>	<p>② <u>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u></p>
<p>③ 주차대수의 <u>단수가 1대미만인 경우</u></p>	<p>③ 주차대수의 <u>끝수가 1대미만인 경우</u></p>

화순군 주차장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8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 (생략) ③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 의</p>	<p>제18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용 승강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p>
<p>제19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인근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200M이내로 한다.</p>	<p>제19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 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 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 가. 직선거리 : 200M이내 나. 도보거리 : 500M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 리 3. 당해 시설물과 통행여건이 편리 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 리

화순군 주차장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③ <u>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u>(단서신설)</u></p> <p>제2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 무면제) ① <u>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u></p> <p>제21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① 영 제9조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부지가격 (㎡당)</u> <u>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액 평가서의 평가금액</u></p> <p>2. <u>주차대수</u> <u>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8㎡당하되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일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1.5㎡로 한다.</u></p>	<p>③ <u>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p> <p>제2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 무면제) ① <u>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u></p> <p>제21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① 영 제9조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 :</u> <u>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u></p> <p>2. <u>무상사용노외 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u> <u>무상사용노외 주차장 총설치비 주차구획수</u></p>

화순군 주차장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3.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총 설치비 : 토지가액 + 건축비</p> <p>4. 토지가액 : 다음각 목중 낮은 가액</p> <p>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 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p> <p>나.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p> <p>5. 건축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금액</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경 우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p> <p>1. 법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한 경우</p> <p>2. 교통상황, 지역여건등을 감 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화순군 주차장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2조 (조업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 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업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당해건축물의 기준주차대수 5%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조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위치는 도시미관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시에 군수가 지정한다.</p>	<p>제22조 (조업주차장 설치기준) ① 군수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위치는 조업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시에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p>
<p>제23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p>	<p>제23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⑤ 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에 1면이상의 지체부자유자 전용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26조 (세입세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다.</p>	<p>제26조 (세입세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p>

화순군 주차장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1. ~ 11. (생략) <u>(신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p> <p>1 ~ 2 (생략) <u>(신설)</u></p> <p>제28조 (용자금액등) ① <u>용자금은 1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u></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제1항의 세입관련 징수를 위한 필수 경비</u></p> <p>제28조 (용자금액등) ① <u>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결정 심사를 할 때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안하여 20,000천원 범위안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자할 수 있다.</u></p>

(현행)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제10조 관련)

급 지	지 역	차 종	1회 주차요금 (3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특급지	온 천 지 구	버 스 화물차		2,000	4,000		
		승용차		1,000	2,000		
1 급지	읍 지 역	소 형	300			50,000	40,000
		대 형	500			70,000	60,000
2 급지	면 지 역	소 형	200			30,000	20,000
		대 형	300			40,000	30,000

-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시간은 30분단위로 하며 30분 미만일 때에는 30분으로 본다.

3.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00

4.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지역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세분할 수 있다.

(특급지 : 화순온천, 도곡온천지구, 1급지 : 화순읍지역, 2급지 : 면지역)

5. 군수는 주차요금을 지역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20%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체증 또는 체감할 수 있으며,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50%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7. 정당한 이유없이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에는 1시간의 불법주차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100%의 가산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제10조 관련)

급 지	지 역	차 종	1회 주차요금 (3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특급지	관 광	버 스 화물차		2,000	4,000		
	휴양지	승용차		1,000	2,000		
1 급지	도 시 지 역 (읍)	소 형	500			50,000	40,000
		대 형	700			70,000	60,000
2 급지	농 촌 지 역 (면)	소 형	300			30,000	20,000
		대 형	500			40,000	30,000

- 비 고

-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차시간은 30분단위로 하며 30분 미만일 때에는 30분으로 한다.
-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00
-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지역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세분할 수 있다.
- 군수는 주차요금을 지역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20%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체증 또는 체감할 수 있으며,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50%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7. 정당한 사유없이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에는 1시간의 불법주차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100%의 가산금액을 징수한다.

(현행)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일부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7조 및 18조 관련)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제의 시설물
숙박 시설	호텔. 관광 호텔. 가족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4객실당 3대+부대운동 시설 별 산정대수+기타부대 시설면적 3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50㎡미만인 시설물
의료 시설	종합병원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8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사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면 적 350㎡미만인 시설물
운동 시설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2타석당 3대	
	옥외수영장	정원 10인당 1대	
	기 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 일반거주지역·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40㎡ 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7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50㎡미만인 시설물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제의 시설물
관람 집회 시설	운동경기 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예식장	시설면적 40㎡당 1대	면적 4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사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 면적 7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00㎡ 당 1대	사업지역의 경우는 면적70㎡미만인 시설물, 사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50㎡미만인 시설물
운수 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	시설면적 100㎡당 1대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사업지역 : 시설면적 100㎡ 당 1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40㎡ 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70㎡ 당 1대	사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사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50㎡미만인 시설물
판매 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60㎡당 1대	면적 6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시설면적 70㎡당 1대	사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70㎡미만인 시설물, 사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50㎡미만인 시설물
위락 지구	유흥음식점	시설면적 60㎡당 1대	면적 6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사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 면적 7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	사업지역의 경우는 면적70㎡미만인 시 설물, 사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50㎡미만인 시설물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제의 시설물
업 무 시 설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7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7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50㎡미만인 시설물
종교시설·전시시설·통신촬영시설·창고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350㎡미만인 시설물
근린생활시설	3층이하 : 시설면적 200㎡당 1대 4층이상 :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50㎡미만인 시설물
단 독 주 택	건축면적200㎡이하는 1대, 건축면적200㎡ 초과인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50㎡당 1대를 더한 대수	면적 150㎡미만인 건축물
공 동 주 택	건축면적 100㎡당 1대	면적 100㎡미만인 건축물
기 타 건 축 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350㎡미만인 시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 700㎡미만인 시설물

비 고 :

1. 시설물의 면적은 연면적을 말하고, 하나의 부지안에 2개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시설물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연면적은 이를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용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로 산정한 설치기준 대수를 합한 대수를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대수로 한다.
4.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당해 시설물의 각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시설물의 증축된 경우에는 증축후의 당해 시설물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대수중 소숫점이하의 단수는 이를 1대로 본다.
6.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 카페, 바, 다실, 연회실, 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판매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 및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5호로 규정을 준용한다.
9.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에는 당해 시설의 부설주차장대수의 1%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되, 대수산정에 관하여는 제5호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제18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숙박 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4객실당 3대 +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 기타부대시설면적 3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의료 시설	종합병원	2평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8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운동 시설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2타석당 3대
	옥외수영장	정원 10인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관람 집회 시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판매 시설	예식장	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판매 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6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 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유흥음식점	시설면적 5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전기시설, 운수시설, 방송, 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 내장창고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00㎡당 1대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p>단독주택</p>	<p>건축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건축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 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p>
<p>공동주택</p>	<p>건축연면적 100㎡당 1대(주택건설기준등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p>
<p>기타 건축물</p>	<p>시설면적 200㎡당 1대</p>

비 고

1.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두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주차대수의 합 (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 °각테 일바 °다실 °연회실 °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 ~ 3%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